

청구인수를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인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매년 인구증감에 의한 청구인수의 변동에 따라 주민들이 혼란과 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자치단체별로 주민감사 청구인수의 격차가 있어 형편성을 고려토록 하고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하향 조정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○ 2002. 9. 5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